용역계약서

㈜유니베이아이엔씨(이하 "갑"이라 함)와 최남회(이하 "을"이라 함)은 "갑"의 개발 프로젝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 계약을 체결한다.

제 1 조 (목적 및 정의)

- 1. 본 계약은 "갑"이 지정한 사업장(이하 "사이트"라 함)에 "을"이 투입하여 프로젝트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2. 본 계약에 있어 용역이란, 본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.

제 2 조 (공동사업인식 및 상호존중)

- 1. 갑"과 "을"은 "프로젝트"를 진행함에 있어 서로 간에 신뢰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.
- 2. 본 계약의 적용 및 기타사항에 관하여 "갑"과 "을"은 각자의 업무영역의 고유성과 특수성을 상호간에 최대한 존중하도록 한다.

제 3 조 (기본계약과 그의 적용)

- 1. 본 계약은 "갑"과 "을"간에 용역의 계약내용을 규율하는 기본 계약으로 한다.
- 2. 본 계약서는 본 계약의 유효 기간 중에 체결되는 개별계약의 모두에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.
- 3. 개별계약에 있어서 본 계약에 정한 사항의 일부를 배제하고 또는 본 계약과 다른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개별계약에서 정한 사항이 우선되는 것으로 한다.

제 4 조 (계약내용)

- 1. 계약명 : 카카오뱅크 해외사업 구축 백엔드 개발 용역
- 2. 계약기간: 2025.11.03 ~ 2026.4.02
- 3. 업무: Payment(결제) 공과금 납부, 충전, 체크카드, 출금, 전자영수증 등
- 4. 근무장소(고객사 요청 시 근무지 변경 될 수 있음)
 -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34, 프로젝트 사무실
- 5. 사업관리자 : ㈜유니베이아이엔씨 양현진 이사

제 5 조 (용역비 대가)

- 1. 본 계약에 의하여 "갑"이 "을"에게 지급하는 월 용역료는 730만원(세전금액)이며 중도입사 및 퇴사 시 일할계산 하여 '을'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.
- 2. 개별 계약의 용역대가 지급은 약정기간 개시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지급하며, "을"은 "갑"에게 매월 말일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며 "갑"은 매 용역월의 익월 15 일에 "을"에게 3.3% 사업/지방소득세 및 산재보험료(17,323원)와 고용보험료(46,194원)를 제외한 용역료를 100% 현금 지급한다.

제 6 조 (업무수행 방법)

- 1. 계약에 따라 "을"은 "갑"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"갑"의 책임자 또는 프로젝트 관리자의 지휘, 통제 아래 "갑"의 업무추진계획에 의거 업무를 수행한다.
- 2. "갑"은 "을"에게 계약기간의 업무내역을 지시하고 산출물 검수 확인을 하며 업무내용이 이행되었을 시 검수를 완료하고 결과를 "을"에게 통보한다.
- 3. "갑"은 "을"의 업무산출물이 업무내역과 비교하여 미비 되었을 시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.
- 4. "을"은 프로젝트의 종료 이전에 프로젝트 검수확인서를 "갑"의 계약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7 조 (보고 및 시정요구권)

- 1. "갑"은 필요 시 "을"에게 수시로 프로젝트 업무수행에 대한 현황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
- 2. "갑"은 "을"에게 프로젝트 구축 업무 및 행위가 "갑"의 요구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해명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"을"은 "갑"이 요구한 기간 내에 이를 성실하게 해명, 시정할 의무가 있다.

제 8 조 (하자보수)

"을"은 업무 수행 결과물에 대하여 업무 종료 전 프로그램 검수 확인을 받으며 기능장에 및 요건사항 수정으로 인하여 업무변경 시 계약기간 내에 업무처리 한다. 업무가 미비 되었을 시 "갑"과 "을"을 상호 협의 하에 용역 연장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.

제 9 조 (권리의 귀속)

- 1. "갑"의 지시에 의한 "을"의 업무 수행 결과물에 관련한 소유권 및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는 "갑"에게 귀속된다.
- 2. "을"은 자기의 영업을 위해 또는 그 외의 목적과 이유를 막론하고 자기 또는 제삼자를 위하여 위 결과물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"갑"에게 사전 허가를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하며 "갑"은 이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"을"에게 통보한다.

제 10 조 (비밀유지)

- 1.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호간 전달된 모든 정보는 발효일 이전이든, 계약기간 이든 엄격히 비밀로 유지되고 본 계약의 목적에만 이용하여야 하며 사전 서면 합의 없이 제 3 자에게 누설되어서는 아니된다. 동 비밀유지 의무는 해당 정보가 공지사실이 되었을 경우 소멸되며 본항의 의무는 본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존속한다.
- 2. 1항의 비밀 유지 의무 준수를 위해 "을" 은 비밀보호 및 지적재산권 보호 의무를 포함한 보 안유지각서를 "갑"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11 조 (계약해지 및 계약해제)

"갑"과 "을"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어 이의 시정 및 개선을 서면으로 촉구했으나 요구하는 기간 내에 "갑" 또는 "을"이 시정 및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

를 해지할 수 있으며 "갑" 또는 "을"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.

- 1. "을 이 업무상 수행 미완료 혹은 귀책사유로 인해 납기 내에 용역을 완료할 수 없음이 인정될 때 계약 해지한다.
- 2. "을"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서에 의한 "갑"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
- 3. 근무태만 및 특별한 사유없이 지각(월 3회이상) 발생할 때 계약 해지한다.
- 4. "갑"의 사업관리자 또는 "발주처" PM의 업무지시 불응 등에 따른 귀책사유
- 5. "발주처"의 프로젝트 요건변경으로 인한 업무범위 및 기간조정 요청으로 인한 프로젝트 참 여 인력 철수 요청 시 상호 협의하여 계약 해지한다.
- 6. "을"의 보안 위반 적발 시 즉시 계약 해지한다.
- 7. 발주처에서 용역비 지급을 연체하거나 미지급 할 시 또는 갑이 지급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'을'은 계약 해지할 수 있다.
- 8. 이외의 이유로 중대한 과실없이 '갑' 또는 '을'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30일 전에 고지하여 상호협의 하에 계약 해지한다.
- 9. 업무수행 상 명백한 귀책사유 그리고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업무수행 역량 불가 판단 시계약해제 한다. (고객사 PM 및 책임자의 서면 확인 후)
- 10. 고객사의 영업비밀 보안사항 및 형사상 업무 위반 시 계약해제 한다.
- 11. 본 계약은 발주처와의 프로젝트 계약을 전제로 하며, 해당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해제된다.

제 12 조 (계약의 발효)

본 기본 계약은 "갑"과 "을"이 본 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발효한다.

제 13 조 (계약의 해석 및 분쟁해결)

- 1. 계약내용의 해석, 용역수행에 관한 "갑"의 지시 또는 결정사항, 기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호간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"갑"과 "을"이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.
- 2. 본 계약의 일부를 개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"갑"과 "을"이 협의하여 개정 및 보완하며 반드시 서면으로 서명하여야 한다. 만일 서면으로 서명하지 않을 시는 무효로 한다.
- 3.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며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"갑"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.

제 14 조 (계약서 보관)

본 계약의 당사자인 "갑"과 "을"은 위의 계약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부 작성, 상호 서명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"읔"

2025년 10월 31일

[계약당사자]

"간"

㈜유니베이아이엔씨

사업자등록번호 : 215-87-46327

대표이사 고 강 혁

주민등록번호 : 811229-1261011

이 름:최남회

3/2/2/

보안 서약서

본인은 주식회사 유니베이아이엔씨(이하 "회사")의 프로젝트 투입 예정자(용역자)로서 본사 및 고객사의 정보 자산 및 영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- 1. 나는 회사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를 회사의 업무수행상 필요에 한해 이용할 것입니다.
- 2. 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취득한 모든 정보를 그 정보의 존재형태와 무관하게 어떠한 형태(SNS, 메일, USB 및 기타저장장치, 업무수행 장비-PC/노트북 등)을 통한 개인적으로 절대 보관하거나 유출하지 않겠습니다.
- 3. 나는 프로젝트 사업장에서 제공받은 정보자산(서류, 사진, 전자파일, 저장매체, 전산장비 등)을 무단변 조, 복사,유출,녹음,촬영,복제,보관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.
- 4. 나는 회사의 사전동의 없이, 회사 내외의 제 3자에게 회사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입니다.
- 5.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, 회사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만 사내데이터 처리시설을 사용하고, 이 시설 내 사적 정보를 보관하지 않겠습니다.
- 6. 나는 프로젝트 사업장에서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(불법 SW 등), 정보저장 및 처리장치(DVD,CD-RW,USB메모리,HDD,ZIP드라이브 등)를 사업장 내에서 사용치 않겠습니다.
- 7. 나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전자메일 시스템을 사용함에 있어서 회사 영업비밀 등의 정보자산보호와 전 자메일의 오남용을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확약하고 이를 사용시 회사의 각종 전자메일사용 규 정을 준수할 것입니다.
- 8.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및 패스워드를 타인과 공동사용 또는 누설치 않겠습니다.
- 9. 나는 회의 보안규정 및 지침, 정책을 준수하겠습니다.
- 10. 나는 재직 및 퇴직 시 회사에서 제공받은 회사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, 퇴직 또는 계약종료 후에도 퇴직 전 프로젝트 사업장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 및 영업비밀은 물론이고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일체 누설치 않겠습니다.

본인은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, 본서약서의 서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"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" 및 "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" 등 관련 법령에 의한 민·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, 회사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 등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,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지체없이 변상·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.

작 성 일 자 : 2025년 10월 31일

㈜유니베이아이엔씨

사업자등록번호 : 215-87-46327

대표이사 고 강 혁

주민등록번호: 811229-1261011

이 름:최남회

3000

외주인력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

작 성 일 : 2025 년 10월 31일

성 명: 최남회

소 속 : ㈜유니베이아이엔씨

본인은 유니베이아이엔씨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아래 기재한 바와 같이 처리한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으며, 이에 동의하는 뜻으로 해당 항에 본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합니다. 또한 본인은 본 동의서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.

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

- 1.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(한글/영문/한문), 전화번호, 휴대폰번호, 긴급연락처(연락 가능한 사람의 성명, 관계, 전화번호), 이메일 주소, 현주소, 수행업무, 통장계좌
- 2. 수집·이용의 목적 개인식별, 용역계약 관계 관리 및 이행, 계약종료 후 프로젝트 제안 등
- 3.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계약기간 종료 후 5년

■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안내

유니베이아이엔씨는 외주인력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. 다만,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.

-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
-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,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

위 개인정보의 수집 · 이용에 동의합니다

성 명: <u>최남회</u> 생명성